

##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161호
- 다. 제출일자 : 2022. 8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2.

### 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지하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, 서울교통공사를 설립·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,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시민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과
- 우리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물류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1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# 나. 주요 사업

-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(1~4호선, 5~8호선)
-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
-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
-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
- 지하철 공기질 개선
-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
-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
-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
- 생활물류지원센터(지하철역) 조성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기관현황

#### 기 관 현 황

- ▶ 설립일자 : 2017. 05. 31
- ▶ 설립목적 : 지하철(1~8호선) 건설·운영 및 부대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
- ▶ 소재지 :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(용답동)
- ▶ 조직현황('22. 6월 기준)
  - 본 사 : 사장, 감사, 6본부, 6실, 42처
  - 현 업 : 1부문, 2원, 1단, 10센터, 58사업소
- ▶ 인력현황('22. 6월 기준) : 정원 16,306명/ 현원 16,247명

### ○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####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○ 예산조치 :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

### 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'23년도 지하철 분야 출자예산 편성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####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■ 출자 동의안 의의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1)에 따라 설립된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2)에서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3)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

1) 지방공기업법 제49조(설립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.

2)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

- 동 동의안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중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<sup>4)</sup>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

## ■ 출자 내용

-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11개 사업, 총 3,902억 13백만원으로 2022년도 15개 사업, 1,961억 29백만원 비해 4개 사업이 감소하고 1,940억 84백만원 (99.0%)이 증액되었음
-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(1,092억 1백만원),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(696억 48백만원), 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365억 33백만원), 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(225억 8백만원)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증가하였고

3)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     ② <생략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4)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·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(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-5653호, '15.10.19.)

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(449억 37백만원),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(81억 53백만원),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(641억 8백만원) 등의 사업비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출자금액이 증가하였음 [세부사항 붙임 참조]

## ■ 출자 필요성

- '17년 5월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'22년 6월 기준 지하철 1~8호선 312.3km, 278개 역사, 전동차 3,563량을 운영하면서 1일 약 5,597천명을 수송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 공기업으로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음
-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승객 감소로 '21년 기준 당기순손실 9,644억원, 부채 6조 6,072억원을 기록<sup>5)</sup> 하였고,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<sup>6)</sup>은 50.2% 수준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며, 무임수송손실

5) 5) 서울교통공사 재무상태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자 산	125,614	123,440	123,389	131,342	132,424	131,990	133,403	150,840
부 채	42,087	43,108	43,430	46,056	51,202	46,455	62,534	66,072
자 본	83,527	80,332	79,959	85,296	81,223	85,535	70,868	84,768
당기순손실	4,245	4,138	3,850	5,254	5,389	5,865	11,137	9,644

6) 지하철 일인당 수송원가

('21년 결산기준, 단위 : 원)

구 분	수송원가	평균운임	부족액	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
서울교통공사	1988	999	989	50.2%

※ 수송원가 = 총괄원가(영업비용+자본비용(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))/수송인원(승차인원기준)

※ 평균운임 = 운수수입/승차인원

※ 부족액 = 수송원가-평균운임

※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율 = 평균운임/수송원가

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<sup>7)</sup>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

- '74년 8월 15일 1호선 서울역~청량리 구간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은 약 40년 이상 시민의 발로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재투자가 시급하고,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출입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통복지 확보차원에서 꾸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점 그리고 현재 서울교통공사 재정여건이 어려워 자력으로 사업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서 서울시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
  
- 다만 서울시는 '23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정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적기에 시행토록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 사용 및 비용 절감 등 자구대책 마련을 통해 출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

7) 최근 5년간 공익서비스 손실금 현황

(단위: 억 원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
계	6,427	6,436	6,553	4,792	4,848
무임수송 손실	3,506	3,540	3,710	2,643	2,784
연장운행 손실	66	71	75	23	-
버스환승 손실	2,644	2,615	2,547	1,947	1,906
정기권 손실	159	159	161	111	90
조조할인 손실	52	52	60	68	68

##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관련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년 (추경포함)	2023년 (편성검토안)	증 감	비 고
합 계	196,129	390,213	194,084	
지하철 1~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27,653	50,161	22,508	국비:시비:공사 =30:30:35
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	61,729	16,792	△44,937	국비:시비 =30:70
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	8,153	-	△8,153	
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	27,203	136,404	109,201	국비:시비:공사 =25:37.5:37.5
생활물류지원센터(지하철역) 조성	400	400	-	시비:공사 = 50:50
지하철 5~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	20,838	57,371	36,533	시비 전액 출자
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	30,896	24,478	△6,418	
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	1,400	1,400	-	
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	10,692	80,340	69,648	
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	1,800	1,800	-	
지하철 환기구 개선	200	-	△200	
지하철 역사 환경개선	565	-	△565	
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	1,300	-	△1,300	
지하철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	1,000	-	△1,000	
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	2,700	2,150	△550	
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	-	18,917	18,917	